

■ 인지세 납부안내

- ▶ 21.1.1 부터 개정된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**부동산의 소유권 이전(분양 및 전매포함) 계약시 인지세를 납부**하여야 합니다.  
(인지세는 재산권에 관련한 계약서 작성시 첨부하게 되는 수입인지의 가격이며, 수입인지는 수수료나 세금을 냈다는 증빙으로 사용됩니다.)
- ▶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시 기간에 따라 **최고 300%의 가산세**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 하시어 **정부수입인지를 구입**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~10억원 이하:15만원)를 구매하신 후 **정부수입인지를 등기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▶ 수입인지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, 우체국,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■ 가산세(관련법령 국제기본법 제 47조의 4 제 9항)

- ▶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▶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▶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- ※ 본세는 별도이며 순수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.

■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(관련법령 인지세법 제 1조, 제 3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8조)


- ▶ 과세대상 :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
- ▶ 납부기한 및 방법 :
  -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/(전매)명의변경 승인일
  - ※ 반드시 계약 당일까지 구매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.
  -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/(전매)명의변경 승인일

■ 인지세 (전자수입인지) 온라인 구매 방법 안내

1. 해당 홈페이지 접속

전자수입인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 
네이버 검색창 "전자수입인지" 검색

2.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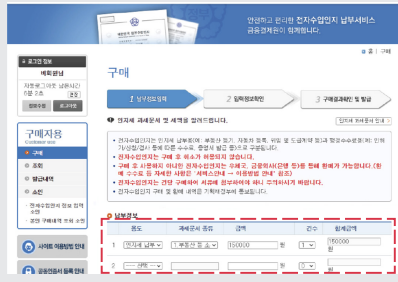


3.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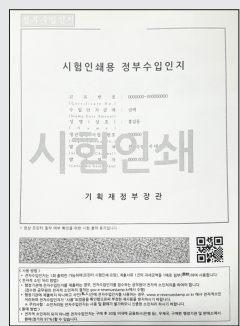
4. 구매 - 납부정보이력

- ① 용도 : 인지세 납부
- ② 과세문서종류 :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- ③ 금액 : 150,000원
- ④ 건수 : 1건
- ⑤ 확인 및 결제



5. 출력 후 계약서와 함께 보관

※ 전자수입인지는 **1회**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재발행 불가)



오프라인 구매방법

구매처 - 우체국, 은행

- ① 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(방문 전 문의 요망)
- ② 전자수입인지
  - 용도 : 인지세 납부      - 금액 : 150,000원
  - 매수 : 1매      - 성명/주민등록번호/연락처 기재
- ③ 결제(현금납부만 가능)
- ④ 전자수입인지 발급
- ⑤ 분양계약서와 함께 보관(분양계약서 앞장 첨부)